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
교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관”이란 평생학습 정보제공,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관계자 연수, 평생학습 상담을 위해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평생학습센터”란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생학습관 산하에 동·권역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학습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추진한다.
- ②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원확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 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평생직업교육, 시민교육, 문자해득교육 등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사업, 그 밖에 구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지역교육청, 대학 및 관내 평생교육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평생교육진흥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에 관하여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재직 중인 국·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되는 3명과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학계 및 관계 전문가,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협의회는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관계전문가, 그 밖의 관련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는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

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본인 및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 위원 본인의 면직의사가 있는 경우
2.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회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9조(실무협의회)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기관·시설간의 협력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관계자와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와 구의회 의원이 구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

제11조(설치)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관할 구역내 또는 인터넷상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업무)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및 평가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평생교육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 간 연계체제 구축 및 지원
4.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학습상담
5. 학습동아리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6.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7. 권역별 · 동별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
8. 그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련 공공 기관 또는 법인에게 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 및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운영직원의 배치)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과 평생교육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소관업무 담당 과장에게 관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관장과 직원의 자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평생학습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 내지 감면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강료의 감면 등 금액과 징수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부 서별 조례 내지 규칙 등으로 정한다.

제16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학습관(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 봉사자를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4장 평생학습센터

제17조(동·권역별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법 제21조의 2에 따라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생학습관 산하에 동·권역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평생학습센터 업무)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동 및 권역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지역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사업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평생학습센터 지정·운영절차 등) ① 평생학습센터의 관리·운영 및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평생학습센터는 제18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③ 평생학습센터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0조(운영직원 배치) ① 평생학습센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유급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센터에 배치하는 직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공동추진 등)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2조(수료자에 대한 예우) 구청장은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교육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사람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우리구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책의 안정적 추진 및 사업의 효과적 실행을 뒷받침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반에 걸친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의 용어 재정립(안 제2조 등)
- 나.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협의회 의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개정 (안 제6조)
- 다.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학습관의 사업평가 및 학습상담 등의 기능 강화 (안 제12조)
- 라. 동별·권역별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및 기능 신설 (안 제17조~20조)

서울특별시 증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증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 증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거쳐 두 차례에 한정하여”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로 한다.

부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기존 위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위탁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최초 위탁된 것으로 본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위탁기간) 시설의 위탁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u>3년</u>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u>거쳐 두 차례에 한정하여</u>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해당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5조(위탁기간) ----- ----- <u>5년</u>-----, ----- ----- <u>거쳐 한 차례</u> <u>에 한정하여</u> ----- ----- ----- -----.</p>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등 사회적인 추세에 맞추어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 등을 조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종사자의 고용안정 등으로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계약 갱신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개정 (안 제5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창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253호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거쳐 두 차례에 한정하여”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위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위탁 운영 중인 노인요양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최초 위탁된 것으로 본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운영관리) ① (생략)</p> <p>②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u>3년</u>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두 차례에 한정하여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해당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4조(운영관리) ① (현행과 같음)</p> <p>② -----<u>5년</u>----- ----- ----- -----<u>거쳐 한 차례에</u> <u>한정하여</u> ----- ----- ----- -----</p>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과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 운영 조례」의 개정 추진과 병행하여 노인요양시설의 위탁기간 등을 조정하여 노인요양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종사자의 고용안정 등으로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노인요양시설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계약 갱신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개정 (안 제4조제2항)

서울특별시 증주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증주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 증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254호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5호 중 “종사자”를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육아종합지원센터”란 「영유아 보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의 본문 중 “영유아 및 아동”을 “영유아”로 하며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6조 제8호를 제10호로 변경하고, 같은 조에 제8호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9. 제49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항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및 주소, 위반행위, 행정처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방법 및 공표사항 등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을 준용한다.

제4장 제목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각각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25조 본문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같은 조 제7호와 제8호를 삭제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같은 조 제10호를 제12호로 변경하고 같은 조에 제10호와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11.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같은 조 제12호 중(현행 10호)“보육과 관련하여”를“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에”로 한다.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각각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사자”를 “직원”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운영위원회)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보육교직원,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며, 운영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제1항 본문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연회비 및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를 “연회비 및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변경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비용 등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육아종합지원센터 세입·세출 예산서에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현행 제3항) 중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를 “이용료를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로 한다.

제29조 본문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33조 제6호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4. (생략)</p> <p>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p> <p>6. (생략)</p> <p>7. “보육정보센터”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4. (현행과 같음)</p> <p>5. ----- ----- ----- ----- 직원 -----.</p> <p>6. (현행과 같음)</p> <p>7. “육아종합지원센터”란 「영유아 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p>
<p>제3조(책임)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한 적절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p>	<p>제3조(책임) ----- ----- 영유아를 ----- 어린이집-----.</p>
<p>제4조(설치) (생략)</p>	<p>제4조(설치) (현행과 같음)</p>
<p>제6조(기능)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7. (생략)</p> <p> <신 설> <신 설></p> <p>8.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p>	<p>제6조(기능)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9. 법 제49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p>
<p>제7조 ~ 제23조 (생략)</p>	<p>제7조 ~ 제23조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4장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p> <p>제24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② 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12조에 따른다.</p> <p>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제23조의2 (위반사실의 공표 등)</p> <p>① 구청장은 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및 주소 위반행위, 행정처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방법 및 공표사항 등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을 준용한다.</p> <p>제4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p> <p>제24조(설치 및 운영) ① ----- ----- ----- 육아종합지원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 -----.</p> <p>② 육아종합지원센터----- 영 제12조에 따른다.</p> <p>③ ----- 육아종합지원센터----- -----.</p>
<p>제25조(기능)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 3. (생략)</p> <p>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p> <p>5. (생략)</p> <p>6. <u>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u></p> <p>7. <u>보육정보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u></p> <p>8. <u>구민의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 보육시설 이용실태 조사</u></p> <p>9. <u>시간제보육시설, 육아카페, 장난감 대여점 등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u></p> <p><신설> <신설></p> <p>10. 그 밖에 <u>보육과 관련하여</u>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25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u></p> <p>5. (현행과 같음)</p> <p>6. <u>부모에 대한 상담·교육</u></p> <p>7. <u>삭제</u></p> <p>8. <u>삭제</u></p> <p>9. <u>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u></p> <p>10. <u>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u></p> <p>11. <u>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u></p> <p>12. ----- <u>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에</u> -----</p>

현행	개정안
<p>제26조(구성) ① <u>보육정보센터</u>에는 <u>보육정보센터</u>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p> <p>② <u>보육정보센터</u>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u>보육정보센터</u>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임명한다.</p> <p>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u>보육정보센터</u>를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u>보육정보센터</u>의 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u>보육정보센터</u>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제26조(구성) ① <u>육아종합지원센터</u>--- <u>육아종합지원센터</u>----- ----- ----- ----- <u>직원</u>-----.</p> <p>②<u>육아종합지원센터</u>----- ----- ----- ----- <u>육아종합지원센터</u>--- --- -----.</p> <p>③ ----- ----- ----- <u>육아종합지원센터</u>----- ----- ----- <u>육아종합지원센터</u>----- -----.</p> <p>④ <u>육아종합지원센터</u>----- -----.</p>
<p><신설></p>	<p>제26조2(운영위원회)</p> <p>① <u>육아종합지원센터</u>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p> <p>1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p> <p>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보육교직원,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중에서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한다.</p>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p> <p>⑤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며, 운영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p> <p>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제27조 (생략)	제27조 (현행과 같음)
<p>제28조(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보육정보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연회비 및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연회비 및 이용료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p> <p>〈신 설〉</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1.~ 6. (생략)</p>	<p>제28조(이용료 등) ① ----- 육아종합지원센터 -----</p> <p>-----</p> <p>-----</p> <p>② -----</p> <p>-----</p> <p>----- 연회비 및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비용 등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육아종합지원센터 세입세출 예산서에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p> <p>1.~ 6. (현행과 같음)</p>
제29조(비용)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시·비보조금 및 구비로 지원한다.	제29조(비용) 육아종합지원센터 -----
제30조 ~ 32조 (생략)	제30조 ~ 32조 (현행과 같음)
<p>제33조(비용의 보조 등)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6.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비</p> <p>7.~10. (생략)</p>	<p>제33조(비용의 보조 등)-----</p> <p>-----</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6. 육아종합지원센터 -----</p> <p>7.~10. (현행과 같음)</p>
제34조 ~ 제38조 (생략)	제34조 ~ 제38조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령 개정(2013. 6. 4. 및 2013.12. 5.)에 따라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준수하고 어린이집 투명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며,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어린이집과 육아지원의 기능 확대를 도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조문의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보육정보센터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정비(안 제2조, 제6조, 제24조~29조, 제33조) : 법 제7조 [개정 2013. 6. 4.]

나. 법 위반 어린이집 위반사실 공표로 지도감독 강화 (안 제23조의2) : 법 제49조3 [본조신설 2013. 6. 4.]

다. '종사자' 명칭을 '직원'으로, "보육시설" 명칭을 "어린이집"으로 변경 (안 제2조, 제3조, 제26조) : 개선사항

라. 그 밖에 "영유아 보육법령"에 맞추어 조례내용 일부 정비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창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기준) ①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의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② 조례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 이라고 한다)를 1건으로 보되, 연간 납부세액을 2회로 나누어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의 경우는 납세고지서 등 건수에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별 1건으로 본다. 다만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수에서 제외한다.

제3조(대상자 선발) ①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중에서 지방세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등을 참작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를 우선으로 선발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선정인원은 5명 이내로 한다.

제4조(우대 및 지원의 범위) ① 조례 제5조 제2호 주차요금은 개인의 경우

본인·배우자 또는 동일세대 직계존비속 명의 중 1대, 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 또는 대표자 명의 중 1대에 한하여 면제한다.

② 조례 제5조 제6호 충무아트홀 할인대상은 개인의 경우 본인, 법인의 경우 대표자에 한하여 할인한다.

③ 조례 제5조 우대 및 지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세무조사 운영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우대 및 지원 기간) 조례 제5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는 선발공고일로부터 1년간 조례 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는 3년간 면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선정기준(안 제2조)

- 성실납세자 등 선정기준일 : 매년 1월 1일
- 지방세 연간 납부건수 : 납세고지서를 1건으로 봄

다. 대상자 선발(안 제3조)

-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를 우선 선발하여(5명 이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라. 우대 및 지원의 범위(안 제4조) : 관련 조례 개정하여 준용

- 주차요금 면제 : 개인(본인 소유차량 1대), 법인(법인소유차량 1대)
- 충무아트홀 공연료 할인 : 개인(본인), 법인(대표자)

마. 우대 및 지원 기간(안 제5조)

- 성실납세자 등 선발공고일로부터 1년간 우대(단,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 본문 중 “제2조제5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를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징계사유	징계기준					
		파면	해임이상	강등이상	정직이상	감봉이상	견책이상
1.복무 및 품위	1. (생략) 2. 품위손상 마. 음주운전 (1)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운전직렬 공무원) - <u>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u> - <u>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u> (2)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는 공무원 - <u>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u>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u>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u> - <u>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u>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
					○		
			○				
						○	
						○	
						○	
						○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파 면	해임이상	강등이상	정직이상	감봉이상 견책이상
	3.~6. (생략) 7.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가. 허위보고, 품위 훼손 등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 <u>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및 부정청탁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u> 다. 알선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행위 라.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행위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금지 의무 위반행위 바.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의무 위반행위 사. 외부강의 신고의무 등 위반행위 아. 경조사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행위 자.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 차. 기타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8. (생략)				○	
2. 청렴 의무	1. (생략) 2. 금품·향응수수 등 <u>가.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u> (1) 100만원 미만(수동) (2) 100만원 미만(능동) (3) 100만원 이상 <u>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 정가상습수취, 알선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u> (1) 수수금액에 관계없이 다.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청탁조로 금품중개 행위 라. 직무관련 정보제공 등 업무편의 조건으로 금품중개 행위 3.~ 4. (생략)		○ ○ ○ ○		○	
3.~ 5. (생략)						
6. 안전 관리	1. 시설물·공사장 안전관리 가. 주요 부재(部材) 등 손상 방치로 안전사고 발생 나. 공사장 안전관리업무 소홀로 중대 재해 발생 다. 고의중과실 등 안전관리 업무 소홀 <u>라. 안전점검 허위보고</u>				○ ○ ○	○
7.~14.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별표 1] 징계기준

현 행	개 정 안
<p>※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 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p>	<p>※ 비고 :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p>

[별표 4]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현 행		징 계 기 준						개 정 안		징 계 기 준							
		구분	징 계 사 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구분	징 계 사 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1. 복무 및 품위	2. 품위손상 마. 음주운전 (1)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 (운전직렬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1회 또는 면허취소 1회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2회 또는 면허취소 2회 (2)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는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1회 또는 면허취소 1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2회 또는 면허취소 2회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3회 또는 면허취소 3회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4조제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0												
1. 복무 및 품위	2. 품위손상 마. 음주운전 (1)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 (운전직렬 공무원)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2)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는 공무원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4조제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상 금품수수 및 허위 안전점검, 음주운전 등 부패행위에 대한 자체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여 구정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성희롱, 성매매 용어 정의 근거 규정 변경

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유무와 상관없이 음주운전 행위 처벌가능
토록 변경

다. 알선·청탁 등 이권개입 행위 징계양정 변경(강화)

라. 직무상의 관련여부를 불문하고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수수 등 행위는 처벌가능토록 변경

마. 안전점검 허위보고 징계규정(감봉이상) 신설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신, 자신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형제자매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자신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제5조제1항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속기관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5.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6.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제14조제1항 중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직무상의 관련여부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 금전,유가증권,부동산,선물,향응,편의”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를 같은 조제1항제7호로 하고 본문 중 “통상적”을 “공무원으로부터 통상적”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3호를 같은 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14조제2항제4호를 같은 조제1항제9호로 하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를 “상급공무원이 하급공무원에게”로 한다.

제14조제3항은 삭제한다.

제14조제4항을 같은 조제2항으로 이동하고 본문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으로 하며, 제1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2의 본문 중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p> <p>① (생략)</p> <p>1. <u>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u></p> <p>2. ~3. (생략)</p> <p>4. <u>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u></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호 이동〉</p> <p>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p> <p>① 공무원은 <u>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u>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p> <p>① (현행과 같음)</p> <p>1. <u>자신, 자신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형제자매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자신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u></p> <p>2. ~ 3. (현행과 같음)</p> <p>4. <u>소속기관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u></p> <p>5. <u>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u></p> <p>6. <u>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u></p> <p>7. <u>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u></p> <p>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p> <p>①<u>직무상의 관련여부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선물, 향응, 편의</u>.....</p>

현행	개정안
<p>1. ~ 6. (생략) <u>7.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u> <신설> <신설> <호 이동></p> <p>② <u>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1.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p> <p>③ <u>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p> <p>④ <u>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1. ~ 6. (현행과 같음) <u>7.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으로부터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u> <u>8.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u> <u>9. 상급공무원이 하급공무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u> <u>10.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u></p> <p>② <u>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삭제)</p> <p>(삭제)</p>

현행	개정안
<p>제14조의2(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p>	<p>제14조의2(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제14조제1항.....제14조제1항.....</p>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상 본인위주로 되어있는 직무회피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고, 금품 등 수수행위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이해관계 직무 회피 상담 연고관계 대상자 확대

- 금전적 이해와 직접 관련된 혈연관계 중 자신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추가
- 자신과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추가
- 구 소속 퇴직공무원(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재직한 자 추가
- 학연,지연,종교,직연,채용동기 등 친분 관계자 추가
- 최근 2년 이내 인허가, 계약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 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친분 관계자 추가

나. 금품수수행위의 직무관련성 여부 삭제